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1.30.

개정 2015.0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그 외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 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판매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 나.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법 제86조, 동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 가능)
 - 다.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 라.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 마.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 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④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계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2.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 (수수료 부과절차)

-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및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결정하되 상품개발위원회(Product Development Committee(이하 "PDC"라 한다))에서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0조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설명 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에 따라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경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부 칙 1 <2009. 1. 3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 <2015. 2.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